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등급)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E14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02-3774-0600)
4. 판매회사 :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http://dart.fss.or.kr> 참조
5. 작성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1월 9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3774-0600,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협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가목에 의거하여 **SICAV FTIF Franklin Income Fund에 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주식으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채권 이자소득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FTIF Franklin Income Fund는 일반투자자를 판매대상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5월 4일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주로 **미국에 소재하거나 미국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기업 및 정부에서 발행한 여하한 등급(저등급 포함)의 채무증권**에 투자하여 인컴수익과 함께 중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FTIF Franklin Income Fund에 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되며, 이러한 수익은 원-미국 달러의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47% S&P 500 + 47% Barclays Capital US Aggregate + 6% Call Index

####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FTIF 프랭클린 인컴 펀드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인컴수익과 자본이득을 추구 * 비교지수: 47% S&P 500 + 47% Barclays Capital US Aggregate + 6% Call Index

#### 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FTIF 프랭클린 인컴 펀드)의 운용전략

본 펀드는 지분증권과 장단기 채무증권으로 구성되는 양도성 증권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분증권은 보유자에게 해당 기업의 일반 운영 성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통 주, 우선주, 전환증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무증권은 발행기관이 부채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증권에는 채권(bonds), 어음(notes), 사채권(debentures)이 포함됩니다.

본 펀드는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유틸리티, 석유, 가스, 부동산, 소비재 등 다양한 기업의 보통주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매력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채, 외국채/미재무성 채권과 같은 투자대상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이자소득(income)을 추구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등급 이하의 채무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등급 채무증권은 스탠다드 & 푸어스(Standard & Poors) 및 무디스(Moody's) 등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위 4개 등급 내로 평가된 증권을 의미합니다. 본 펀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무디스의 CAA 등급, 스탠다드 & 푸어스의 CCC 등급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미등급 증권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낮은 증권은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펀드는 비 미국계 증권에 순투자자산의 25%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 미국계 증권이나 미국예탁증서(ADR, 미국 기업이나 비 미국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증서로서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합니다.

본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현재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향후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는 저평가되었거나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증권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자료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자 하는 증권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실행합니다. 분석을 할 때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 기업의 경험과 경영진의 역량
- 금리 및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 부채 만기 일정 및 차입 요건
- 기업의 재무상황 변동 및 그러한 변동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 미래 현금흐름, 이자상환능력, 배당금지급능력, 자산 규모 및 향후 수익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증권의 상대적 가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이나 경제의 변동성이 과다하거나 침체 국면이 지속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방어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펀드는 투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의 개별자산(주식/채권)별 투자비중은 25% ~ 75% 범위 내에 있을 예정이며, 기존에는 주로 40% ~ 60%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었습니다.

## 라.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기준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피투자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금액이 원-미국 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투자운용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라 모투자신탁 수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 목적의 거래(목표헤지비율: 100% 추구)를 실시할 예정이지

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치변동이나 펀드편출입으로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헤징 거래도 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헤지]**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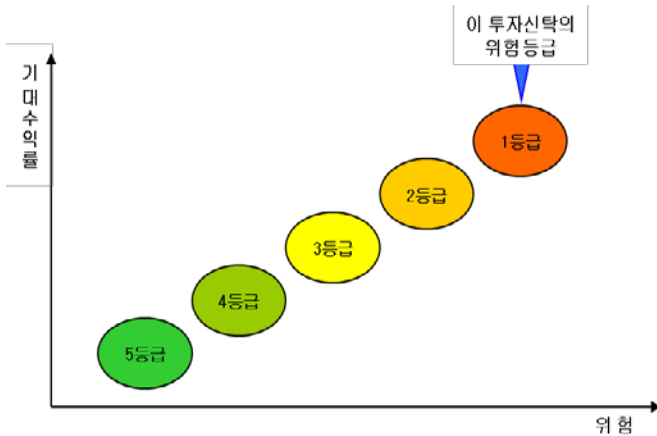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b>원본 손실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li> </ul>
<b>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채산을 해외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채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li> <li>✓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채권은 국외 유가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li> </ul>
<b>환율 변동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해외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관련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채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li> <l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달러화로 환전된 자금 및 달러화로 표시되는 투자금액이 원-미국 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목적의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li> </ul>
<b>저등급 또는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의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 등급 이하의 고수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펀드에 대한 투자는 높은 신용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 투자등급 이하의 증권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 전략으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없거나(unrated) 부실 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등급, 고수의 증권은 고등급, 저수의 증권에 비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경기침체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li> </ul>
<b>부실채권의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발행기관이 현재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채권(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발행자가 이자 지급을 재개하거나, 기타 유리한 상황이 조만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li> </ul>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비유동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유동성위험</b>	✓ 채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특성 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9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10 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b>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b>	✓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b>해지 위험</b>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순자산가치 변동위험</b>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40% ~ 60% 내외인 주식혼합형 펀드는 당사가 정의한 5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2등급으로 구분되지만, 이 투자신탁은 비율 조정형 자산배분 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산배분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위험등급상 **가장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미국 주식 및 채권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인컴수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기준 통화가 미국 달러화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미국 달러 대비 한국 원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모투자신탁 수준에서 소정의 환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변화에 따른 펀드예상수익률의 변화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2013.12.3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백상훈	1972	책임운용전문인력	47 개	10,663 억	당사 컴플라이언스팀(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2000-2008)	-

					당사 FTMIS 팀(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2009.5-현재)	
김동일	1962	부책임운 용전문인 력	55 개	13,499 억	삼성생명(1987-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트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CIO(2001-현재)	-

주 1)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FTIF Franklin Income Fund 운용전문인력

펀드명	성명	나이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2013년 9월 30일 기준)		책임운용 전문인력 여부
					펀드수	규모 (십억)	
프랭클린 인컴 펀드	Edward D. Perks	44	부회장, 포트폴리오 매니저	- 1992년 프랭클린템플턴에 입사하여 2002년부터 프랭클린 인컴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음	11	\$97.438.5	Y

주 1) 상기인이 FTIF Franklin Income Fund 의 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13.01.01~ 13.12.31)	(..~ ..)	(..~ ..)	(..~ ..)	(..~ ..)
	집합투자기구	11.78				
비교지수	12.25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Class A		(13.01.01~ 13.12.31)	(..~ ..)	(..~ ..)	(..~ ..)	(..~ ..)
	집합투자기구	10.85				
비교지수	12.25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Class Ae		(13.01.30~ 13.12.31)	(..~ ..)	(..~ ..)	(..~ ..)	(..~ ..)
	집합투자기구	9.22				
비교지수	10.78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Class C		(13.01.01~ 13.12.31)	(..~ ..)	(..~ ..)	(..~ ..)	(..~ ..)
	집합투자기구	10.52				
비교지수	12.25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13.01.02~ 13.12.31)	(..~ ..)	(..~ ..)	(..~ ..)	(..~ ..)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Class Ce	집합투자기구	10.96				
	비교지수	11.03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13.06.24~ 13.12.31)	(..~ ..)	(..~ ..)	(..~ ..)	(..~ ..)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Class C-P	집합투자기구	16.34				
	비교지수	16.17				

주1) 비교지수 : 47% S&P 500 + 47% Barclays Capital US Aggregate + 6% Call Index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클래스의 수익률 그래프]



※ 데이터 산출에 대해서는 변경 전 기존펀드명을 사용하였습니다.

##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30일 미만시, 이익금 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banking: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6% 이내	
C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90일 미만시, 이익금



<b>C-e</b>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X		의 70%
<b>C-I</b>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b>C-F</b>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b>C-P</b>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b>부과기준</b>		매입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됩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부과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	증권 거래비용
<b>A</b>	0.1000	0.7000	0.0300	0.0100	0.0024	<b>0.8424</b>	0.8565	0.0000
<b>A-e</b>		0.4200			0.0020	<b>0.5620</b>	0.5696	0.0000
<b>C</b>		1.0000			0.0024	<b>1.1424</b>	1.1507	0.0000
<b>C-e</b>		0.6000			0.0022	<b>0.7422</b>	0.7496	0.0000
<b>C-I</b>		0.1000			실비	<b>0.2400+실비</b>	-	-
<b>C-F</b>		0.0300			실비	<b>0.1700+실비</b>	-	-
<b>C-P</b>		0.8000			0.0022	<b>0.9422</b>	0.9427	0.0000
<b>부과 시기</b>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설정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최근 설정된 클래스 또는 총보수비율(기타비용 제외)이 해당 클래스와 가장 근접한 클래스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입니다.

주6) CLASS A-e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비율을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연 0.35%로 인하됩니다.

주7) CLASS C-e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비율을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연 0.50%로 인하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sup>1)</sup>**

(단위: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Class A 수익증권	186,583	375,085	582,909	1,200,500
		선취판매수수료: 99,010			
	Class A-e 수익증권	118,304	244,575	383,788	797,490
		선취판매수수료: 59,642			
	Class C 수익증권	119,948	378,135	662,787	1,508,690
	Class C-e 수익증권	77,931	245,678	430,618	980,208
	Class C-I 수익증권	24,650	83,035	167,499	310,045
	Class C-F 수익증권	17,460	55,044	96,480	219,615
Class C-P 수익증권	99,928	311,872	546,642	1,244,31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Class A와 Class 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5개월째입니다.

주3) Class A-e와 Class C-e의 선취판매수수료 또는/및 판매보수는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의 주2) 및 “나.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의 주6), 주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율식으로 인화되며, 본 예시표에서는 2013년 3월 31일 투자를 가정하여 선취판매수수료 또는/및 판매보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보수·비용 고려시, 예상 총보수·비용**

(Class A 수익증권 예시)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신탁업자 보수 포함)	총보수비용	선취 판매수수료
<b>FTIF Franklin Income Fund I share</b>	0.60%	0.00%	0.20%	0.06%	0.86%	0.00%
<b>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혼합-재간접형)</b>	0.10%	0.70%	0.01%	0.0465%	0.8565%	1.00%
<b>총보수·비용</b>	<b>0.70%</b>	<b>0.70%</b>	<b>0.21%</b>	<b>0.1065%</b>	<b>1.7165%</b>	<b>1.00%</b>

주1) FTIF Franklin Income Fund I share의 기타비용(신탁업자 보수 포함)은 201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나. 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계좌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3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 연금외수령시 과세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나이별로 5.5~3.3% 원천징수하고, 1,2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일[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franklintempleton.co.kr">www.franklintempleton.co.kr</a>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게시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T+8)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5영업일(T+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T+9)에 환매대금을 지급 

###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제 1 기
	2013-12-17
운용자산	75,628,961,755
증권	71,102,759,057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4,526,202,698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2,023,161,930
자산총계	77,652,123,685
운용부채	
기타부채	1,807,977,158
부채총계	1,807,977,158
원본	69,301,349,160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6,542,797,367
자본총계	75,844,146,527
손익계산서	제 1 기
	2012-12-18~ 2013-12-17
운용수익	6,775,434,360
이자수익	41,149,828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6,722,351,476
기타 수익	11,933,056
운용비용	3,482,010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3,482,010
기타 비용	
당기순이익	6,771,952,350
매매회전율(%)	

###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